

##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마  
번 호 256

제출년월일 2002. 5.  
제 출 자 제 천 시 장

### 개정이

주 감사 구체의 활성화 도모하고 주 의 집 이 모아하도록 감사  
청구 주민수로 대로 낮추는 주 이 차지 짐여 의한 제도 도입 측  
에 개정비

### 2. 주요 자

조례 제2조(감사청구 주민 도지사에게 감사 청구하 경 연서  
할 때야 할 수 “500명이상 은 “200명이상”로 개정

### 3.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

행정자치 권고 행정자치 16800-31 (2002. 28)

붙 임 레아

시구조근대비표

3. 임법예고는 구

##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시 | 미술 창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500명 이상”을 “200명 이상”로 한다

부작

**조례**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0명이상” 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_____ _____ “200명이상” _____



제 388 호

제 천 시 보

2002. 4. 12(금)

일 법 예 고

제천시 공고 제2002-269호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2년 4월 12일

제 천 시 장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2. 개정취지

- 주민감사청구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 주민 수를 대폭 낮추는 등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사청구 주민수 조정

-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500명이상"을 "200명이상"으로 낮추고자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2년 5월 2일까지 제천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640-606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기타 참고사항 등의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第2章 地方自治

### 第1節 通 則

#### ●地方自治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全文改正 1988 · 4 · 6	法律第4004號
改正 1989 · 12 · 30	法律第4162號
1990 · 12 · 31	法律第4310號
1991 · 5 · 23	法律第4367號
1991 · 12 · 31	法律第4464號
1994 · 3 · 16	法律第4741號
1994 · 12 · 20	法律第4789號
1995 · 1 · 5	法律第4877號
1995 · 8 · 4	法律第4959號
1995 · 12 · 29	法律第5069號(教育法)
1999 · 2 · 5	法律第5759號(農業基盤公社災農地管理基金法)
1999 · 2 · 8	法律第5893號(河川法)
1999 · 8 · 31	法律第6002號
2000 · 1 · 12	法律第6115號

### 第1章 總 條

#### 第1節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地方自治團體의 종류와 그組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와의 基本的 관계를 정함으로써 地方自治行政의 民主性과 能率性을 도모하며 地方의 균형적 발전과 大韓民國의 民主的 발전을 기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89 · 12 · 30)

第2條 (地方自治團體의 종류) ①地方自治團體는 大別하여 다음의 2種으로 한다. (改正 94 · 12 · 20)

1. 特別市와 廣城市 및 道
2. 市와 郡 및 區

②地方自治團體인 區(이하 “自治區”라 한다)는 特別市와 廣城市의 管轄區域안의 區에 한하며, 自治區의 自治權의 범위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郡과 다르게 할 수 있다. (改正 94 · 12 · 20)

③第1項의 地方自治團體에 특정한 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別途의 特別地方自治團體를 設置할 수 있다.

④特別地方自治團體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第3條 (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관할) ①地方自治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②特特別市와 廣城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政府의 直轄下에 두고, 市는 道의 管轄區域안에, 郡은 廣城市 또는 道의 管轄區域안에 두며, 自治區는 特別市

##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⑤第4項의 规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審查·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決定한 때에는 請求人名簿를 수정하고, 이를 異議申請을 한 者와 第2項의 规定에 의한 請求人の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異議申請을 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의 规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없는 경우 또는 同項의 规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異議申請에 대하여 第5項의 规定에 의한 決定이 완료된 경우 第1項의 规定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請求를 受理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를 却下하여 이를 請求人の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項의 规定에 의하여 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60日이내에 條例의 制定 또는 改廢案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附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請求人の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第1項의 规定에 의한 20歳이상의 住民 總數는 年度別로 산정하되, 住民登録法의 规定에 의한 住民登録票에 의하여 조사한 前年度 12月 31日 현재 人口統計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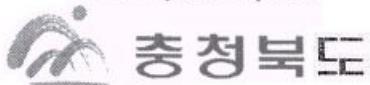
⑨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한다.

本條新設 99·8·31]

第13條의4 (住民의 監査請求) ①地方自治團體의 20歳이상의 住民은 20歳이상의 住民 總數의 50分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20歳이상의 住民數이상의 連署로 市·道에 있어서는 主務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그 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처리가 法律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監査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監査請求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搜查 또는 裁判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機關에서 監査하였거나 監査중인 사항. 다만, 다른 機關에서 監査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監査에서 漏落된 경우에는 그

www.cb21.net



문 360-765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전화 043-220-2914 /전송 043-220-2919  
감사관실 감사관 김경용 / 감사담당 김승진 / 담당자 신강섭 (ks60@cb21.net)

문서번호	감사16800-123	선	2002	지	
시행일자	2002.01.28 ( 1년 )	접	일자	2002. 1. 28	시
공개여부	공개	수	시간		결
수 신	더01-12	번호	992	재	.
참 조	감사부서장		처리과		공
			담당자		람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 시행(권고)

- 1 행정자치부 16800-31(2002. 1.23)호의 이첩입니다.
2. 지난 2000년 3월2일부터 시행된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붙임과 같이 시행방안을 통보(권고)하니 업무추진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3. 시군에서는 본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추진실적을 매월말 우리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부합동감사 및 우리도 감사  
통하여 점검할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전결 감사관 김경용



16  
17

# 住民監査請求制 活性化 方案

## 1. 住民監査請求人 數 緩和 勸告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감사청구인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도록 조례 개정 권고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 등 문제점 야기

자치단체별로 청구인수를 20세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들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므로 “인원수”로 정하도록 권고

⇒ 광역자치단체 :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 : 200명 내외

※ 국민감사청구인수는 300명으로 시행령 제정

## 2. 政府合同監査 등을 통한 運營實態 持續點檢 · 指導

정부합동감사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동 제도의 초기정책 및 활성화 유도